

- 2026년 광산구 청년창업자 사업장 월 임대료 지원사업 -  
지 원 대 상 자 모 집 공 고

광주광역시 광산구 초기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창업 정착을 위해 「2026년 광산구 청년창업자 사업장 월 임대료 지원사업」 지원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27일

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

1 사업개요

- 기 간 : 2026. 4. ~ 2026. 12.(예산소진 시까지)
- 지원규모 : 50명 내외
- 지원대상 :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창업자

| 신 청 조 건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 령     | 19~39세(1986. 1. 1. ~ 2007. 12. 31.)의 청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거 주 지   |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광산구 거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 업 장   | 2023. 1. 1. 이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*로서, 사업장 소재지가 광산구인 사업장* |
| 월 임 대 료 | 월 임대료 200만원 이하인 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“개인사업자”란 본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 영업 중인 자를 말하며, 공동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제외한다.

\* “사업장 소재지가 광산구인 사업장”이란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광산구로 되어 있고,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목적물 및 실제 영업장소가 광산구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.

### ◆ 제외대상

- 공동사업자 및 법인사업자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
-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현재 취업 중인 자
- 유흥, 사치향락, 투기업종,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, 무점포(인터넷 등) 사업자, 휴·폐업 중인 사업장 (기타 제외 업종은 붙임1 참조)
-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·직계존비속·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목적의 사업장 임대료 지원을 동일 기간에 받고 있는 자
- 본인 명의 통장의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
- 기타 해당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○ 지원내용 : 선정월부터 3개월간 사업장 월 임대료의 70%를 지원  
(월 20만원 한도, 총 60만원 이내)

\* (예시) 월 임대료 20만원인 경우 ⇒ 총 42만원 지원(월 14만원(20만원\*70%)\*3개월)

\* 월 임대료는 상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를 기준으로 하며, 관리비, 보증금 등은 제외

○ 선정방법 : 신청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접수순으로 선정(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)

\* 선정 후 의무사항 : 지원종료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광산구로 유지

○ 지급방법 : 선정월부터 3개월간의 임대료 납부 → 지원금 지급신청(3개월 납부 후 다음달 10일한) → 지원금 계좌입금(지급신청한 달의 20일)

○ 사 업 비 : 30,000천원 (200천원\*50명\*3개월)

○ 추진절차

| 신청 및 접수<br>(‘26.4.27.~12.31.) | 심사 및 결과 통보<br>(접수일로부터 10일한) | 3 개 월 분<br>임 대 료 납 부<br>(선정후 3개월간) | 지원금지급 신청<br>(3개월 납부 후,<br>다음달 10일한) | 지 원 금 지 급<br>(지급신청한달의 20일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예산 소진 시까지<br>접수               | 지원 자격 확인 및<br>결과 통보         | 주민등록 및 사업장<br>주소지 유지 필수            | 지급신청서 및<br>증빙자료 제출                  | 선정자 계좌입금                   |
| 청년 창업자 → 광산구                  | 광산구 → 청년 창업자                | 청년 창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청년 창업자 → 광산구                        | 광산구 → 청년 창업자               |

## 2

## 신청 및 접수

### ① 신청 · 접수

○ 신청기간 : 2026. 4. 27.(월) ~ 예산소진시까지

○ 신청인 : 지원대상 신청조건 충족자

○ 신청방법 : 신청인 본인 방문신청 ※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

- (접수처) 광산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청년활력팀

\* 접수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

\* 평일 근무시간(9시~18시)내 접수 / 주말, 공휴일 및 점심시간(12시~13시) 제외

### o 제출서류 (연번 순서대로 제출)

※ 제출서류 중 별도 발급이 필요한 서류는 공고일(2026. 4. 27.)부터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.

| 연번 | 제 출 서 류 명       | 주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사업 참여 신청서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식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사업 참여 협약서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식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식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주민등록표 초본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</li> <li>·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오프라인)동 행정복지센터<br>(온라인)정부24             |
| 5 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본인 기준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</li> <li>· 기혼인 경우, 배우자 기준 추가 제출<br/>(배우자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</li> </ul> | (오프라인)동 행정복지센터<br>(온라인)전자가족관계<br>등록시스템  |
| 6  |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오프라인) 세무서<br>(온라인)홈택스                  |
| 7  |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2개 이상 사업장 운영여부 확인용</li> <li>* (온라인 발급 시) 3시간 이내 처리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오프라인) 세무서<br>(온라인)홈택스                  |
| 8  |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  | 임대료 이체 확인증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신청일 기준 직전월 또는 당월의 실제 임대료<br/>이체내역</li> <li>· 이체일시, 금액, 성명(신청자, 임대인) 등 표시</li> </ul>         | (오프라인)가래은행 창구<br>(온라인)가래은행 앱 또는<br>홈페이지 |
| 10 | 입금통장 사본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임대료 지원금 수령용 통장</li> <li>· 신청자 명의 자유입출금식 통장<br/>(예금, 적금, 주식계좌 등 불가)</li> </ul>               | (오프라인)가래은행 창구<br>(온라인)가래은행 앱 또는<br>홈페이지 |
| 11 | 국세납세(완납)증명서     | · 본인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오프라인) 동행정복지센터<br>세무서<br>(온라인)정부24, 홈택스 |
| 12 | 지방세납세(완납)증명서    | · 본인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오프라인) 동행정복지센터<br>(온라인)정부24             |
| 13 |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취업여부 확인용</li> <li>· 조회 및 표출조건 : 가입자 전체 / 주민등록표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온라인)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

- o 선정인원 : 50명 내외
- o 선정방법 : 신청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접수순으로 선정(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)
- o 결과발표 : 선정여부 개별 문자 통보(접수일 기준 10일 한)

## 4

### 지원금 신청 및 지급

- 지원기간 : 2026. 4. ~ 2026. 12. (예산소진시까지)
- 지원내용 : 선정월부터 3개월간의 사업장 월 임대료 70% 지원  
(월 20만원 한도, 총 60만원 이내)
  - \* 선정자 의무사항 : 지원종료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광산구로 유지
- 지급방법 : 선정월부터 3개월간의 임대료 납부 → 지원금 지급신청(3개월 납부 후 다음달 10일한) → 지원금 계좌입금(지급신청한 달의 20일)
  - \* (예시) 4월 선정 → 3개월(4~6월) 임대료 납부 → 지원금 지급 신청(7월10일한) → 지원금 지급(7월20일)
  - \* 지원금 지급 신청 제출자료 : 선정시 별도 안내 예정
-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
  -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 -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
  - 임대료 지원기간 중 사업장을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광산구 외 지역으로 전출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
  - 정당한 사유 없이 업종을 변경하여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
  - 지원 대상 확정 후 포기하거나 휴·폐업하는 경우
  - 기타 위법사항 등 사업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 5

### 기타 유의사항

※ 신청 전 반드시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- 본 사업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므로 신청자는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. 공고문 미확인, 제출서류 누락, 기재사항 착오·누락, 허위기재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접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.
- 접수된 서류 검토 결과 신청요건 미충족, 허위기재, 증빙자료와 신청내용의 불일치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접수가 되었더라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하며, 향후 해당 사업의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이는 광산구청 홈페이지에 재공고 합니다.
- 문의처 : 광산구 일자리정책과 청년활력팀 (☎062-960-3873)

## 붙임 1

## 청년창업자 사업장 월 임대료 지원사업 지원 제외업종

※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준용

| 중분류             | 표준산업 분류                     |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타제품제조업         | 33409 중             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도매 및<br>상품중개업   | 46102 중                     | 담배 중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46209 중                     | 앞담배 도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46333                       | 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46463 중             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소매업<br>(자동차제외)  | 47640 중             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47811 중                     | 약국, 한약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47859 중                     | 성인용품 판매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47911,<br>47912 중   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47993 중                     | 다단계 방문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창고및운송관련<br>서비스업 | 52991 중                     | 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음식점 및 주점업       | 56211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유흥주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56212                       | 무도유흥주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출판업             | 58211,<br>58212,<br>58219 중 |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금융 및 보험업        | 63999 중                     |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보서비스업          | 63999 중                     |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금융업             | 64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험 및 연금업        | 65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 및 연금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금융및보험관련<br>서비스업 | 66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동산업            | 68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동산업<br>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<br>- 부동산관리업(6821)<br>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<br>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<br>- 비거주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|

| 중분류                 | 표준산업 분류  |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문 서비스업             | 711, 712 | 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의업                 | 731      | 수의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       | 73904 중  | 감정평가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지원서비스업            | 75330 중  | 홍신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75993    |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지원서비스업            | 75999 중  |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계 및 장비임대업          | 76390 중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건업                 | 86       | 보건업<br>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스포츠 및 오락<br>관련 서비스업 | 91113    |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91121    | 골프장 운영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9122 중   |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91242    | 카지노 운영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91249    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91291    | 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 개인<br>서비스업       | 9612 중   |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<br>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<br>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<br>-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|
|                     | 96992    |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96999 중  |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국민 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            |